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3. 12 선고 2018가단54195 판결 [구상금 청구의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피고 2 내지 4의 법정대리인(친권자모) B

피고들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강성윤

피고들 소송복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주익

변론 종결2019. 2. 19.

판결 선고2019. 3. 12.

주 문

1.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

가. 피고 B은 14,946,909원 및 이에 대하여,

나. 피고 C, D, E은 각 9,964,606원 및 이에 대하여,

각 2018. 8. 22.부터 2018. 10. 18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
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조정현

별지